

농업 ·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군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69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9.

발의자 : 박군택 · 박정 · 양부남

허영 · 황명선 · 정진욱

추미애 · 한준호 · 민형배

전진숙 · 조인철 · 박홍배

정준호 · 박정현 · 장경태

안도걸 · 윤후덕 · 박지원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촌의 범위를 읍 · 면의 지역과 읍 · 면 외의 지역 중 해당 지역의 농업, 농업 관련 산업,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.

그런데 농촌, 준농촌 및 도시지역이 혼재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, 시 · 군에 소속된 읍 · 면 지역과는 달리 같은 동(洞) 지역 안에서 영농생활을 영위하는 주민 간에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농촌 관련 정책과 지원 등이 고르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지규모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일정한 부분

을 농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, 광역시 자치구 지역에 대한
농촌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5호 등).

농업 ·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 ·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다목(종전의 나목) 중 “가목 외의”를 “가목 및 나목 외의”로 한다.

나.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지규모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제1항제1호 중 “농어촌”을 “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”으로 한다.

②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농어촌지역”을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농촌지역 및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에 따른 어촌지역(이하 “농어촌지역”이라 한다)”이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3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“농촌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	5. ----- ----- -----.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나.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</u> <u> 중 농지규모와 농업경영체</u> <u> 등록 현황 등을 고려하여</u> <u>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</u> <u> 하는 지역에서 「국토의</u> <u>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</u> <u> 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라</u> <u>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</u> <u> 지역을 제외한 지역</u>
<u>나.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, 농업 관련 산업,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</u>	<u>다. 가목 및 나목 외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6. ~ 9. (생 략)	6. ~ 9. (현행과 같음)